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37
----------	------

발의연월일 : 2017. 2. 22.

발의자 : 우원식 · 송옥주 · 이용득
윤종오 · 최인호 · 이학영
인재근 · 김현권 · 이원욱
김영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

수

8.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업무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외에 차장 2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국회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사무처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

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5조(차장) ① 차장은 입법차장·사무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처리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을 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6조(의장비서실) ① 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 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조직) ①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

지 않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 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 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별정직국가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3항 및 제8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 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 한다)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⑤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

치 및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장(제8조 및 제9조) 및 제4장(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②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④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위원의 직무) ①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

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의사진행의 보좌
5. 그 밖에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0조(법인의 설립)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 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그 밖에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의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
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
법」·「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국회도서
관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
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第1章 總則</u></p> <p><u>第1條(目的)</u> 이 法은 國會事務處 (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組織 과 職務 기타 諸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u>第2條(職務)</u> 事務處는 議長의 指 揮·監督을 받아 國會 및 國會 議員의 立法活動과 國會의 行 政業務에 관連된 다음 各號의 事務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法律案, 請願등의 접수·처리 2. 國會의 法案審查, 豫算決算 審查, 國政監查 및 調査, 國家 政策評價등의 지원 3. 國會의 本會議 및 委員會會 議에 관한 지원 4. 國會議員의 議政活動支援 5. 國會의 議事中繼放送 및 弘 報 6. 國會의 議員外交活動支援 7. 國會所屬公務員에 대한 教育 訓練과 議會制度 및 운영에 관한 研修 	<p><u>제1장 총칙</u></p> <p><u>제1조(목적)</u> 이 법은 국회사무처 (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 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직무)</u> 사무처는 의장의 지 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 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 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 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 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 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p>8. 國會의 廳舍管理·警備 및 厚生</p> <p>9. 國會의 職場民防衛隊 및 職場豫備軍의 편성·운영과 非常對備業務</p> <p>10. 國家公務員法·「국가재정법」·國有財產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處 또는 事務總長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p> <p>11. 監查業務 기타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p>	<p>관한 연수</p> <p>8.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p> <p>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p> <p>10.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p> <p>11. 감사업무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p>
<p>第3條(公務員의 任用) ①事務處에 事務總長 이외에 次長 2人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p> <p>②5級이상의 公務員은 議長이 任免하고 기타의 公務員은 事務總長이 任免한다. 다만,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議長은 事務總長에게 그 任用權의 一部를 委任할 수 있다.</p> <p>③議長은 國會機關相互間에 人事交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人事交流審議委員會</p>	<p>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외에 차장 2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p> <p>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③ 의장은 국회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p>

의 審議를 거쳐 人事交流計劃 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事務總長은 立法支援活動에 필요한 專門人力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 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第2章 事務處

第4條(事務總長) ①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을 받아 國會의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②事務總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③議長이 행한 처분에 대한 行政訴訟의 被告는 事務總長으로 한다.

第5條(次長) ①次長은 立法次長·事務次長으로 하며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免한다.

②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③次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여

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 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사무처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5조(차장) ① 차장은 입법차장·사무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

事務處의 事務를 分掌處理하며,
事務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
는 立法次長·事務次長의 順序
로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④立法次長은 立法補助業務와
委員會業務支援 및 이에 따른
調整을 함에 있어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⑤事務次長은 行政管理業務에
있어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第6條(議長秘書室) ①議長의 秘書
業務와 기타 이에 관련된 事項
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
여 議長秘書室을 둔다.

②議長秘書室에 秘書室長 1人
을 두되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
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
다.

③秘書室長은 議長의 命을 받
아 室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
員을 指揮·監督한다.

第7條(組織) ①事務處의 補助機關
은 次長·室長·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 다만, 所管業務의 特성상
室長·局長 또는 課長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規則이 정

여 사무처의 사무를 分장처리
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을 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6조(의장비서실) ① 의장의 비
서업무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 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
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
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
다.

③ 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
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
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조직) ① 사무처의 보조기
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
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
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규

하는 바에 따라 補助機關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補助機關은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室長·局長 또는 課長으로 본다.

②事務總長, 次長·室長 및 局長을 直接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 事務次長 밑에 局에 속하지 아니하는 課를 둘 수 있다.

③室長은 1級 또는 2級, 局長은 2級 또는 3級, 課長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補하고, 擔當官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級상당 내지 4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④第3項 및 第8條第3項·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3級이상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 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 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3항 및 제8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

있는 職位(課長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位를 제외한다)중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定員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規則으로 정하는 職位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⑤事務處 및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 室·局·課 및 擔當官의 설치 및 事務分掌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課 및 이에 상당하는 擔當官(委員會의 立法調查官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事務分掌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할 수 있다.

第3章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
第8條(委員會의 公務員) ①委員會에 首席專門委員 1人을 포함한 專門委員과 立法審議官·立法調查官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다만, 特別委員會의 首席專門委員과 委員會의 立法審議官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⑤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

수 있다.

② 首席專門委員은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補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③ 首席專門委員외의 專門委員은 2級인 일반직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補한다.

④ 立法審議官은 2級 또는 3級, 立法調查官은 3級 내지 5級인 일반직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補한다.

⑤ 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專門委員과 필요한 公務員을 特別委員會에 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⑥ 專門委員의 任用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

第9條(專門委員의 職務) ① 首席專門委員은 所屬委員會委員長의 指揮를 받아 그 業務를 처리하며, 그 委員會所屬公務員을 指

여 둘 수 있다.

②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④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위원의 직무) ①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p>揮·監督한다.</p> <p>②專門委員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p> <p>1. 法律案, 豫算案, 請願 등 所管案件에 대한 檢討報告</p> <p>2. 각종 議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資料의 薦集·調查·研究 및 所屬委員에 대한 제공</p> <p>3. 委員會에서의 각종 質疑시 所屬委員에 대한 質疑資料의 제공</p> <p>4. 議事進行의 보좌</p> <p>5. 기타 所屬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p>	<p>지휘·감독한다.</p> <p>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p>1.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p> <p>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p> <p>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p> <p>4. 의사진행의 보좌</p> <p>5. 그 밖에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第4章 補則</p> <p>第10條(法人的 設立) ①議長은 國會와 관련된 研究·調查, 研修, 國會議員 및 國會公務員에 대한 厚生福祉增進, 國會의 議事中繼放送 기타 國會活動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法人을 設立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的 任員의 選任 및 事業計劃에 관하여는 定款이 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10조(법인의 설립)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그 밖에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의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p>

하는 바에 따라 議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대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金 또는 補助金을 交付할 수 있다.

④ 事務總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대하여 그 所屬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다.

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대하여 國·公有財產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無償으로 貸付·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第11條(時差制 勤務) 事務總長은 國會의 會期중에 한하여 業務의 事情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勤務時間을 變更하여 勤務하게 할 수 있다.

第12條(權限의 委任) 國家公務員法·「國家재정법」·國有財產法·物品管理法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 또는 事務總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規則이

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p>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p>	<p>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第13條(施行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p>	<p>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第14條(委任規定) 國家公務員法에서 國會規則으로 정하도록 委任된 事項과 이 法에서 規則으로 정하도록 委任된 事項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이를 정한다.</p>	<p>제14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이를 정한다.</p>